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이성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윤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검찰청법」에서 “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과 달리,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은 종전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점에서, 정비 대상 법률에서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기관의 범위(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를 명확히

하였고, 검사의 사경의 수사지휘권 삭제 및 중수청 신설 취지를 반영하는 등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삭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 10조를 유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	<삭 제>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공

찰청 검사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소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법률 제 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 지방공소청장---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공소청장----- --.